

2025 회 계 연 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국 토 교 통 부 소 관

2026.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II. 심사경과	2
III. 예비비 지출 개요	?
IV. 대체토론의 요지	3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4
VI. 심사결과	4
VII. 소수의견의 요지	4
VIII.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4

※ 붙임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5회 계 연 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6. 8.

국토교통위원장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국토교통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 일자 : 2026. 5. 29.

2. 회부 일자 : 2026. 7. 2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 8. 20.)

상정, 심사, 원안의결

○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8. 21.)

상정, 대체토론, 원안의결

Ⅲ. 예비비 지출 개요

1.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예비비 지출(총지출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156억원을 배정받아 156억원을 집행(100.0%)하였음.

【 2025년 예비비 결산 】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예비비(증)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567	15,567	15,567	-	-
○ 일반회계	15,567	15,567	15,567	-	-
- 주거급여지원(1034-302)	15,567	15,567	15,567	-	-

IV. 대체토론의 요지

- 없음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함.

VI. 심사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I.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붙임>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 결과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 총 144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토교통부	-	-	6	31	104	(8)	133
국토 분야	-	-	2	13	59	(4)	70
교통 분야	-	-	4	18	45	(4)	6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	-	2	3	-	5
새만금개발청	-	-	1	1	4	-	6
합계	-	-	7	34	111	(8)	144

2. 시정요구사항(예비비)

가.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신청 ·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시정,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2025.11.27. 서울특별시에 예비비 155억 6,7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서울시가 최초 제출한 집행실적(2026.2월)은 예비비보다 많은 219억 9,600만원의 불용을 예정하고 있었고, 최종 정산(2026.7월)시에도 92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비를 ‘기준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예비비의 불용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동 내역사업으로 예비비를 155억 6,700만원 배정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잔액은 예비비 배정액보다 규모가 큰 619억 6,100만원으로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과 소요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계상하여 예비비를 신청하고, 예비비 신청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시정) ○ 국토교통부는 예비비 배정 이후 대규모 국고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가구 및 급여액 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본예산 단계에서 정확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할 것(제도개선)		

3. 부대의견

○ 없음